글로벌 윤리 규범인 지구적 책임(GR) 탄생과 기업 관점에서 이행 과정 고찰

김창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1972년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조직들에 국제 규범으로 부여된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은 다른 성격의 개념이다. 또한 지구적 책임 이행은 유엔 글로벌 의제와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특히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 학설과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첫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탄생한 지구적 책임(GR) 개념을 규명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기업 관점에서 지구적 책임(GR)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 수단들을 문헌 조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엔 시스템 내의 지구적 책임(GR) 이행 글로벌 아키텍처(추진체계) 전개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보고 수단인 ESG와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한 차이점 분석 등이다.

주제어: 유엔과 기업 파트너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 ESG, 지속가능보고서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970년대 이전에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정부 조직은 거시적 안목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 또한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부 운영에 참여하면서 보건 위생과 생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Rittel & Webber, 1973).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류의 존립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환경의 위협은 국가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므로 새롭게 지구적 책임(Global Responsibility, 이하 GR) 개념이 글로벌 규범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시민사회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국제사회의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정책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과정에 이해당사자이자 수혜 대상인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쌍방향 거버넌스 구

*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 박사과정(pk5438@korea.ac.kr)

축이었다. 이의 실마리는 1972년 인류의 미래를 위해 국제 사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유엔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이다(김창환,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로 학술적 논의와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1972년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조직에 국제 규범으로 부여된 지구적 책임(GR)과 크게 다른 점은 책임의 수용 여부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CSR) 채택 여부가 자율성에 기반하고, 지구적 책임(Corporate Global Responsibility, 이하 CGR)은 국가단위 합의에 의해 당위(當爲)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범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환경적 책임이 대두되기도 전에 존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의 구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업의 지구적 책임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 규제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환경 규제를 당연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공해처럼 고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공감(共感)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도 대부분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니 아껴야 하고, 인간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지속불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환경의 원인과 결과도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노력은 이제 시공간(時空間)을 관통(貫通)하는 담론이 되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旅程)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유엔 차원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표어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결의한 스톡홀름 회의(1972)에서 출발하여, 리오 정상회의(1992)에서는 1987년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의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1]에서 정립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D) 개념을 공식 글로벌 아젠다로 채택하였다. 또한 요하네스버그(2002, Rio+10) 회의에서는 전 지구인이 지방, 국가, 지역, 글로벌 단위의 모든 영역에서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하는 으뜸 실천 가치이자 규범으로 지속가능발전(SD)이 재차 각인(刻印)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글로벌 의제 실천에 기업도 유엔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구적 책임 이행 수단을 전개하고 있다.

1)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로, 동 보고서에서 기업도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수준을 높여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함께 점점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복합위기 사회에서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뚫고 해법을 찾아 실존적이고 잠재적인 글로벌 또는 지역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파트너십에 기반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다. 특히 유엔의 거버넌스 중에서 핵심 파트너인 기업은 국가를 제외하고, 당대(當代)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인 만큼 사회문제 해법(解法)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命題)는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 인류 공동의 책임을 실행할 힘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사회공헌 기관이기도 한 기업은 창의력과 혁신의 경영 활동을 통해 인류와 우리 공동의 집(our common home)[2]인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기업 관련 어원에서도 사회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Company는 라틴어 Companio이다. Companio는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ntrepreneur도 사회와 더불어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역이나 상업을 뜻하는 Commerce도 사회적 유대와 동의어였다. 기업, 기업가, 상업 모두 그 출발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1972년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조직들에 국제 규범으로 부여된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은 다른 성격의 개념이다. 또한 지구적 책임 이행은 유엔 글로벌 의제와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특히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 학설과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첫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탄생한 지구적 책임(GR) 개념을 규명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기업측면에서 지구적 책임(GR)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 수단들을 문헌 조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엔 시스템 내의 지구적 책임(GR) 이행 글로벌 아키텍처(추진체계) 전개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보고 수단인 ESG와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한 차이점 분석 등이다.

2)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planet Earth and its ecosystems are our common home and that 'Mother Earth' is a common expression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regions라고 언급함.

Ⅱ. 글로벌 윤리 규범인 지구적 책임(GR) 분석

1. 유엔 인간환경선언에 따른 지구적 책임 등장 배경 및 분류

〈표 1〉과 같이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3]에서 언급한 지구적 책임(GR)은 역사적 산물로 탄생한 것이다. 동 선언문에서 인간을 둘러싼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 외에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책임도 강조하였다. 더불어 모든 기업과 기관에게도 포괄적인 사회에 대한 책임[4]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에서 부여된 지구적 책임 이행 방안으로 공평한 책임의식(all sharing equitably) 공유 및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주창하였다. 즉 공동의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책임을 상쇄하는 공동선 확장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이다(김창환, 2020). 이를 종합하면 지구적 책임(GR)은 국가 간 다자 협의체인 유엔에서 "하나뿐인 지구" 보존이라는 모두의 염원(Universal Purpose)을 담아 신규로 만든 특정 국가,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이 아닌, 지구촌 시민들이 공동의 노력(common efforts)으로 총체적 실천(collective action)을 위한 "글로벌 윤리의 나침반이자 지속가능성 규범"이다.

〈표 1〉 유엔 인간환경선언에 따른 이행 주체별 지구적 책임(GR) 분류

구분	활동 및 결과			비고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 Corporate Glob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공헌	결과의 합 (their values and the sum of their actions) ↓	기업시민 내재화
대학의 지구적 책임(UGR) University Global Responsibility	➔	대학의 사회공헌		대학시민 내재화

3) To achieve this environmental goal will demand the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by citizens and communities and by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at every level, all sharing equitably in common efforts. Individuals in all walks of life as well as organizations in many fields, by their values and the sum of their actions, will shape the world environment of the futur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will bear the greatest burden for large-scale environmental policy and action within their jurisdictions. -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에서 발췌

4) 지구적 책임 이행 개별 주체에게 부여된 책임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책임(totality or collective responsibility)을 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인용한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은 사회에 대한 모든 영역(예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문화적 책임, 윤리적 책임 등)에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쓰이는 사회적 책임이란 용례는 모든 책임 중에서 사회와 관계된 책임으로 한정됨으로 사회책임으로 용어의 변경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표준국어대사전은 '-적'을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고 정의한다.

비정부기구의 지구적 책임(NGOG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Global Responsibility	➔	비정부기구의 사회공헌	사회가치 창출(CSV)	비정부기구의 시민 내재화
※ 시민의 지구적 책임(IGR) Individual Global Responsibility	➔	개인의 사회공헌		환경교육을 통해 사회공헌에 참여

주: 시민의 지구적 책임을 IGR(Individual Globall Responsibility)로 표기한 이유는 기업의 지구적 책임인 CGR과 구별하기 위함. 참고로 동 선언문에서는 Individual과 Citizen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 역할을 강조함.

출처: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 인용 및 정리(김창환, 2020 재인용 및 부분 수정)

2.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조직에 부여된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지구적 책임[5]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creating sustainable society, 이하 CSS)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구적 책임의 핵심은 자신의 발자국(footprints)을 자신이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responsibility)이란 단어의 어원을 분석하면, 결국 응답하는 능력(responsive+ability)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지구적 책임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지구 행성에 대한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responsible action)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 전제 조건은 지구적 책임 실천 당사자로서 시민(citizenship)[6] 개념을 모든 조직에 내재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적 책임의 실행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적인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시민과도 같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실천 의지의 은유적 표현이다. 유네스코(2014)에 따르면, 시민(citizen)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깨어있는 시민은 인권, 민주주의, 정의, 비

5)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발간한 'Discovering ISO 26000'에서 왜 사회책임이 중요하냐는 물음에 "사회책임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SD)에 기여하는 것이다(The objective of social responsibility is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ISO 26000에서 정의하는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지속가능발전(SD)에 기여하는 점에서는 지구적 책임(Global Responsibility)과 동일하게 본다.

6) citizenship에 대한 용어 번역 관련하여, 통상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정치사회적 권리와 정부의 제한적 개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시민권'이라고 번역하고, 공화주의 관점은 정치참여를 통해 구성되는 시민적 덕성과 민주적 심의를 통한 시민 권리의 내용을 확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시민성' 또는 '공민성'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시민권은 개인이 국가와 맺는 관계, 특히 개인의 법적인 지위를 말해 주는 개념이다. 이에 지구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성'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지속가능경영 웹사이트에서 'corporate citizenship'을 자발적으로 기업시민성 대신에 글로벌 시민이라 표현하고, 포스코도 기업시민으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citizenship 용어 번역과 관련하여, 실행 주체로서 의제(擬製)된 시민 의미를 부각하고자 시민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차별, 다양성과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 더 좋은 세계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이다.

〈그림 1〉과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을 정리하면, 먼저 지구적 책임을 상쇄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결과물인 지속가능한 사회가치가 창출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실천 의지와 사회공헌 활동의 총합으로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지구적 책임의 반복적 이행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CSS) 조성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이 완성된다. 요약하면 지구적 책임(GR)과 사회가치창출(creating social value, 이하 CSV)[7]은 지속가능한 사회 달성(CSS)을 위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후 관계이다. 기업은 영리 기관이자 사회공헌 기관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ESG 요소(要素)를 통합함으로써 경제 이익과 함께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기업의 지구적 책임 이행 순선환 모델이다. 기업이 사회공헌 기관인 이유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지불식간에 만든 사회적 불평등, 안전과 보건 등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경영 규범[8]으로 내재화(內在化) 해야 하기 때문이다.

7) 사회가치창출(CSV) 주체는 정부를 포함한 개인 및 모든 조직이 대상이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이하 CSV)은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회가치창출(CSV)은 공유가치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가치를 의미한다.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공유가치의 총량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 및 정책을 일컫는 개념이다. 2011년 마이클 포터(하버드대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FSG 대표)가 HBR에 발표한 논문인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에서 제안했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에서 사업주(기업) 책무로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녹색경영을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한다.

〈그림 1〉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GR) 이행의 선순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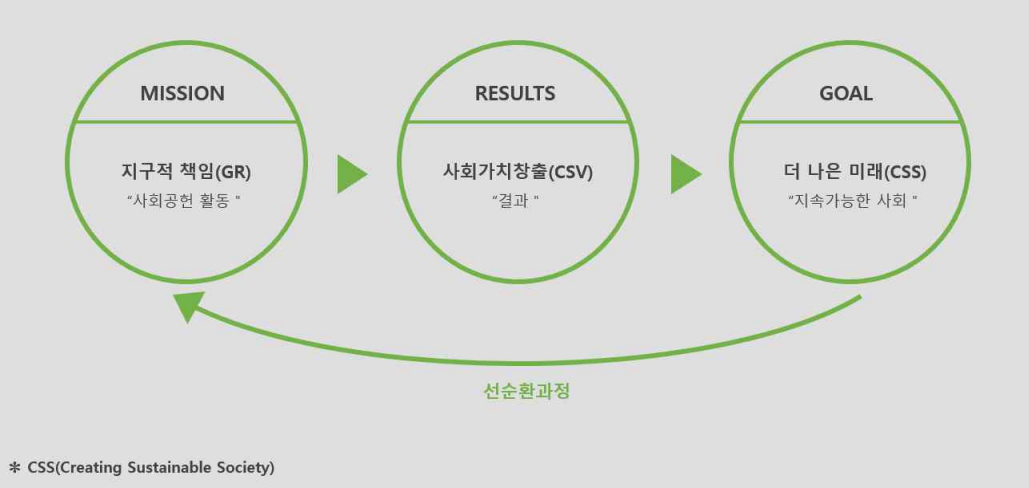

3.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제 전개 과정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유엔 글로벌 의제 전개 과정은, 〈표 2〉과 같이 1992년 국가수반급으로 격상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새로운 의제로 상정되었고, 후속으로 기업의 지구적 책임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글로벌 아키텍처 이행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 사이에 재차(再次)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기업이 유엔과 파트너십으로 지구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 193개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된 21세기 인간과 지구를 위한 헌장(憲章)이자 인류 공동의 의제인 2030 UN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모든 국가와 정부, 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더 강화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2〉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제 전개 과정

글로벌 주요 의제	유엔 주요 회의	유엔 시스템 내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아키텍처	비고
지구적 책임(GR)	Stockholm 회의 (1972년)	UNEP (1972년)	환경에 대한 국제 FRAMEWORK 구축
		↓	

<table>
<tr><td rowspan="4">지속가능발전(SD)_
New Agenda로
채택</td><td rowspan="2">Earth Summit 회의
(1992년)</td><td colspan="3">UNEP FI
(1992년)</td><td>Major Groups
기업 포함</td></tr>
<tr><td>UNEP</td><td>➔</td><td>GRI
(1997년)</td><td>자발적 지속가능 보고
체계 확립</td></tr>
<tr><td>UN MDGs
(2000년)</td><td colspan="2"></td><td>UNGC
(2000년)</td><td>UN에서 핵심 파트너로
기업 부상</td></tr>
<tr><td></td><td colspan="3">🡻</td><td>🡻</td></tr>
<tr><td rowspan="3">지속가능발전(SD)_
global consensus
and
partnership_모두
가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내재화</td><td>Johannesburg 회의
(2002년, Rio+10)</td><td colspan="3">UN PRI
(2006년)</td><td>ESG 공식 출범</td></tr>
<tr><td></td><td colspan="3">🡻</td><td>🡻</td></tr>
<tr><td>UN SDGs
(2015년)</td><td colspan="3">UN SDGs
(2016 – 2030)</td><td>지구와 인간을 위한
현장 채택</td></tr>
</table>

Ⅲ. 지구적 책임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글로벌 이행 수단 비교 분석

유엔 시스템 내에서 특히 유엔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이 지구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이행 체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업시민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파트너십 모델

1992년 리우 정상회의[9]에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EP FI 선언문(statement of commit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식적으로 기업 경영에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10] 내재화가 지

9) 1992년 각국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일명 Earth Summit)와 각국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가 함께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리우회의라 한다. UNCED에서 경제와 환경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환경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도입되었다.

10) We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corporate commitment and an integral part of our pursuit of good corporate citizenship.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EP FI 선언문(1992년)에서 발췌

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시민 개념[11]을 기업 현장에서 조직 운영에 내재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관련 이론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유엔 체제 내에서 유엔(UNEP)과 기업의 파트너십(public-corporate partnership, 이하 P-C Partnership)[12]을 통한 자발적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델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행동 강령인 Agenda 21[13]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메이저 그룹으로 기업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Agenda 21과 관련된 활동 및 평가에 모든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기업, 학계, 관련 국제 조직은 환경비용을 회계와 제품 가격에 내재화하는 이론 및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Agenda 21은 4부분 39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박(切迫)한 전 지구적 현안을 해결하고, 21세기 인류에게 닥칠 도전 과제에 대비하는 방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과 제도 및 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청사진이다. Agenda 21 명칭은 21세기에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과제라는 뜻으로 작명되었다.

2.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GRI) 자율 이행 모델

1997년 설립된 UNEP 협력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14]는 2000년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G1 발표 이후 G2(2002년), G3(2006년), G4(2013년), GRI Standards(2016년)로 개정되었다. GRI는 기업의 환경과 사회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창(提唱)되었으나, GRI Standards 이후에는 모든 조직의 지속가능성 보고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GRI Standards는 기업이나 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경제 부문 6개 주제, 환경 부문 8개 주제, 사회 부문 19개 주제

11)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R, Corporate Sustainability, Corporate Responsibility 명칭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다룬다(K Smith, 2019).

12) 대표적인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사례로, 본 논문에서는 Public-Corporate Partnership이라 표시한다. 여기서 공공(Public)은 UN을 의미한다.

13) Agenda 21 is a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to be taken globally, nationally and locally by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Governments, and Major Groups in every area in which human impacts on the environment.

14) 유엔기금위원회(United Nations Foundation)의 운영 자금 지원을 받는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비영리 기구로, 1997년 미국의 환경단체 세레스(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와 UNEP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SSD(Rio+10)에서 G2가 발표되었으며, WSSD의 이행계획 부속서 3장(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18조에서 기업의 환경과 사회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와 환경 성과를 개선하는 자율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대중적인 환경과 사회 이슈 보고 방식인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를 언급하였다. 2002년 말에 본부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하고 상설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100여 개 국가와 15,477개 기업 및 기관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고 있다.

등 광범위한 주제별 성과 보고를 위한 세부 지침과 우수 사례 제시를 포함한다. 현재 GRI Standards는 ESG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Triple Bottom-line[15]보고서라고도 한다. 이는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선언에서 도입한 글로벌 지속가능 규범인 지구적 사회책임의 실천 영역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표 4〉과 같이 지속가능경영[16]은 UN SYSTEM 내에서 수사에 불과한 포괄적 책임 중에서 핵심 영역인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선택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이행 성과 보고를 통해 지구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안된 개념이다. 이러한 GRI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미비점이 존재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가가 아닌 보고에 중점을 둔 관계로 평가 분야의 정량화된 지표가 없어 객관적 정량화에 의한 적합, 부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타 기업과의 상대적 비교도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보고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의 문제이다.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삼자 검증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을 통한 파트너십 모델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00년 7월 출범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하 UNGC)는 세계인권선언 (1948),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선언 (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99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2003)의 내용 중에서 핵심 가치인 인권(Human Right), 노동 기준(Labor Standard), 환경(Environment) 및 반부패(Anti-Corruption)를 반영한 실천 로드맵인 10대 원칙을 제정하였다. 선택된 10대 원칙은 기업 운영과 경영전략 내재화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또는 기업책임) 이니셔티브이다. 회원사로 가입하면 매년 UNGC 사무국에 이행보고서(COP)나 참여보고서(COE)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15) 1994년 존 엘킹턴(John Elkington)이 제안한 회계개념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정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논의 및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최근 ESG 관련 비재무정보 측정 표준화 및 회계기준 반영 논의의 배경이 된 개념이다.

16) 2002년 WSSD(Rio+10)는 People, Planet&Prosperity를 주제로 채택하여 기존 환경보호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도 사회통합과 환경보호, 경제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기업 차원에서는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반영되었다.

162개국 13,555개 기업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도 기업은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의무을 명시하고, 기업의 합당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견실한 규제 환경 내에서 기업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였다.[17]

4. ESG 중대성 평가 프레임워크 모델

1) ESG 등장 배경

UNEP FI(Finance Initiative)는 기업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수(必須)라고 판단하고, 기업 투자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비재무적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2003년 UNEP FI 산하에 자산관리 워킹그룹(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이하 AMWG)[18]을 창설하고, ESG(E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요소[19]가 투자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와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2002년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 제3장 소비 및 생산의 비지속가능한 유형 변화 유도(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서 금융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도록 하는 권고가 영향을 주었다. UNEP FI 자산관리 워킹그룹(AMWG)은 2004년 6월 프

17)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 3장 소비 및 생산의 비지속가능한 유형 변화 유도(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의 18번에서 Enhance corporate 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his would include actions at all levels to: (a) Encourage industry to improve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voluntary initiatives, includ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codes of conduct, certification and public reporting on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taking into account such initiatives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tandards and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s on sustainability reporting, bearing in mind principle 11 of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 Encourage dialogue between enterprises and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operate and other stakeholders; (c)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incorporate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ations into their decision-making processes; (d) Develop workplace-based partnerships and programmes, including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s.

18) UNEP FI AMWG는 11개 지역 섹터 주류(主流) 연구기관에 ESG 관련 이슈의 재무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다.

19) 투자 결정에서 ESG를 고려해야 하는 근거로 ① 잘 정비된 거버넌스(G)를 갖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사업 실적을 달성하고, 특히 금융 스캔들과 같은 사례는 경영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한다. ②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점점 강화되는 입법 규제 ③ 소비자 선호의 변화 ④ NGO의 사회적 압박 증가를 언급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비재무적 분석이 재무적 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의 위험 요인들과 기회들을 더욱 잘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랑스 파리에서 ESG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Implementing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주제의 투자자 원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이슈를 투자 결정에 통합하는 것은 투자 손실 감소 및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SG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내재화하고, 건실한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장기간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ESG 용어 작명의 비밀을 풀 단서이다. UNEP FI 자산관리 워킹그룹(AMWG)은 기업 거버넌스가 사회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별도로 기업 거버넌스에 주목하게 된 동기는 2000년부터 5년간 FTSE350[20] 지수를 활용하여 기업 거버넌스와 재무적 성과(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이하 CFP)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 때문이다. 동 연구 보고서는 기업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와 함께 이사들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임기 보장 등 견실(堅實)한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이 주식 수익률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UNEP FI의 도움으로 작성된,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21] 및 스위스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인 'Who Cares Wins[22]–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에서도 ESG 용어가 등장한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ESG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자 외에 기업, 연기금, 금융기관, 정부, NGO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ESG와 관련된 역할을 언급하였다. 특히 기업의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과 조치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 필수조건으로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기업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체계를 지적한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용어를 선택한 이유를 세 영역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기술하였다.

2) 기존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범주에 ESG 편입

2005년 UNEP FI가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다국적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

20)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350 지수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순서대로 FTSE 100 및 FTSE 250에 편입된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50개 기업의 주가를 지수화한 종합주가 지수이다.

21)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을 형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투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계 최대의 개발 금융기관이다.

22) Who Cares Wins Initiative Serie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2004년), Investing for Long-Term Value(2005년), Communicating ESG Value Drivers and the Company-Investor Interface (2006년), New Frontiers in Emerging Markets Investment(2007년), Future Proof? Embedding ESG issues in Investment Markets(2008년)

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협력하여, ESG 요소를 기관 투자에 통합하기 위한 법령 프레임워크(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 보고서를 발간했다. 왜냐하면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 구체화, 현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지속가능경영과 ESG에 대한 논의가 심화(深化)되기 전에 기업활동을 지배한 관점은 기업의 역할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정통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이념인 주주자본주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논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23]은 법과 윤리의 제약 아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기업이 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불건전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기업은 직접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선 및 기부를 하기보다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행하여 개별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킨 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개별 주주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선이나 기부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프레시필즈(Freshfields) 보고서는 UN 차원에서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 이행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다. 동 보고서에서 본 연구 성과가 사회적인 이목을 끌 것이며, 좁은 의미로 재정 수익 극대화만이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이라는 기존의 잘못된 법령 해석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투자 분석에 ESG 이슈를 통합 반영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용되며, 모든 재판의 관련 법 해석에 적용(clearly permissible and is arguably required in all jurisdictions)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기존 수탁자 책임의 범주에 ESG가 편입되는 기념비적(ground-breaking)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프레시필즈(Freshfields) 보고서는 수탁자 책임 법령 해석의 글로벌 규범으로 인식되었고, 본격적으로 투자 및 자산 운영에 ESG 이슈가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19년 Generation Foundation 후원으로 UN PRI와 UNEP FI가 공동 발간한 21세기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24] 최종 보고서에서 재차 ESG 이슈를 장기 투자가치 동인(動因)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수탁 의무의 미이행이다(Failing to consider all long-term

23) 사회적 책임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며, 기업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주주에 의해 고용된 전문경영인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자원을 투입한다면 이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주주-대리인(principal-agent problem)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낳고 회사의 생존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24) 2015년 9월 UN PRI, UNEP FI, UNEP Inquiry 및 UNGC가 공동으로 발간한 21세기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보고서이다. 이는 2005년 프레쉬필즈(Freshfields) 보고서 발간 후 10년 동안 수탁자 책임의 변화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06년에는 Generation Foundation 후원으로 UN PRI와 UNEP FI가 투자 관행 및 의사 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자 의무 준수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4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investment value drivers, including ESG issues, is a failure of fiduciary duty)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탁 의무의 미이행은 향후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increasingly likely to be subject to legal challenge)이라고 언급하였다.

3) UN PRI 출범을 통한 ESG 주류화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Kofi Annan)이 주도하고, UNEP FI와 UNGC가 주축으로 금융기관,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에 의해 제정되었다. UN PRI는 Who Cares Wins Initiative Series와 프레시필즈(Freshfields) 보고서를 반영한 6개 원칙,[25] 33개 행동지침이 있다. 책임투자원칙(PRI)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한 보상과 환경과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사명으로 태동하였다. 주요 내용은 책임투자원칙을 수탁자 책무로 인식하고, 사전적으로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하고, 사후적으로 적극 주주권(active owners)을 행사하며, 투자대상 기업에 ESG 관련 이슈 공시 및 이행 사항 보고를 요구하며, 투자 금융산업의 책임투자 원칙 수용과 이행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2006년 4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연기금의 기관장들과 함께 UN PRI를 선포함으로써 공식 출범[26]하게 되었다. 이는 1992년 UN이 주창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유엔과 기업의 파트너십이 진일보(進一步)한 노력의 결과물로 기업 경영에 ESG를 본격 도입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게오르그 켈(Georg Kell) 전 UNGC 사무총장은, 2018년 8월 19일자 Forbes 인터넷판 기고문에서 코피 아난 전(前) UN 사무총장 공적으로 현대 기업 지속가능성 운동의 씨앗을 뿌린 아

25) UN PRI 6대 원칙: 1.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ESG 이슈를 반영한다(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2. 적극적 주주로서 활동하고 ESG 사안을 투자 보유 정책과 관행에 통합할 것이다(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3.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이슈가 적절히 공개되도록 노력한다(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4. 투자 업계 내 책임투자원칙의 도입 및 실행을 증진시킨다(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5. 책임투자원칙 이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6. 책임투자원칙의 이행에 관한 활동 및 진전 사항을 보고한다(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매년 PRI 가입기관은 책임투자 방안, 정책 및 절차를 공개하고, PRI는 각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동종 업계 대비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공식 PRI 등급을 부여한다. 책임투자원칙은 글로벌 벤치마크로 자리잡았다. 출처: https://www.unpri.org/pri/about-the-pri 인용

26) SECRETARY-GENERAL LAUNCHE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BACKED BY WORLD'S LARGEST INVESTORS(https://www.un.org/press/en/2006/sg2111.doc.htm, 2006년 4월 27일 자 UN 보도자료 인용)

버지(Father Of The Modern Corporate Sustainability Movement)라고 칭송하였다.

UN PRI는 현재 135개 국가의 7,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이고, 정책 플랫폼이자 실천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2〉와 같이, ESG는 본래 금융 투자가 매개되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중 경제를 제외한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선택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중대성(materiality)[27]에 대한 평가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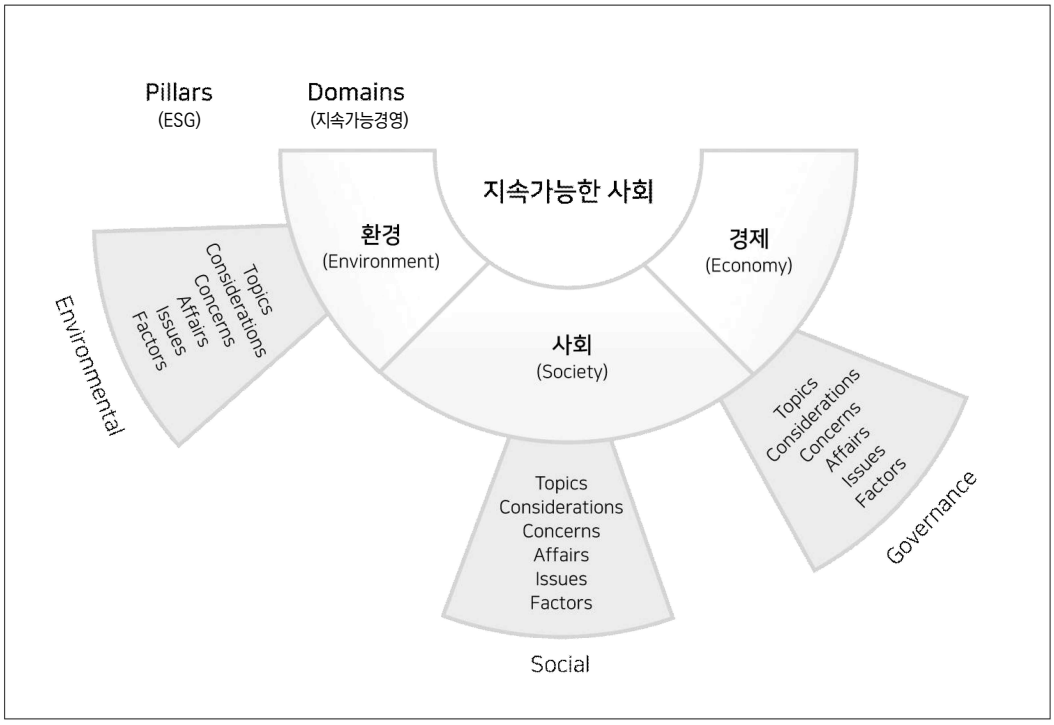

27) GRI G4 guidelines에 따르면, 조직의 주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잠재적으로 보고서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GRI G4의 특징은 중대성(materiality)의 반영이다. 이전 지속가능보고서들은 언급해야 하는 주제(topics)가 명확하지 않고 방대한 보고 범위 때문에 제삼자가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후반부터 GRI는 정보의 중요도 순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배치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materiality 번역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GRI는 보고할 만큼 중요한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관련성(relevance) 및 중대성(materi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ISO 26000은 관리, 개선 및 전달해야 할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성(relevance) 및 중요성(signific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부 문헌에서 materiality를 중요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나, 본 논문은 용어 구별의 실익이 존재함으로 중대성을 사용한다.

미국 대법원(1976년) 판례[28]에 따르면, 중대성 충족 조건은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누락된 사실이 공개되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total mix of information)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중대성 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精巧)하게 중대성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중대성 매트릭스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기업의 핵심 이슈와 사업의 리스크 혹은 현재의 기회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도구이다. 또한 ESG 평가 지표는 topics, issues, affairs, factors, considerations, concerns 등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보다 다양화, 세분화되는 추세이며, 〈그림 2〉와 같이 평가 대상은 환경(E), 사회(S) 영역의 총체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합(subset)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본래 주식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적법한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에 관한 선임과 개회 등의 절차와 내용을 정해두고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기능은 주주를 대신해 경영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주주 가치에 부합되도록 이사의 '선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거버넌스는 경제 및 사회 영역에 걸쳐 모두 중요하게 인식된다. 하지만 ESG 관점에서 기업 거버넌스(G)는 환경적(E), 사회적(S) 영역의 사회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제이자 제도이다. 더 나아가 기업 거버넌스(G)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에 정당성(power)을 부여하는 동인(動因)이다.

4) ESG의 발전 방향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자본 투자사인 블랙록(BlackRock) 회장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1년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인종적 정의(racial justice), 경제적 불평등, 지역사회 문제는 현행 ESG 영역 중에서 사회적(S) 이슈로 분류되지만,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 저소득층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E) 이슈인가, 사회적(S) 이슈인가라고 반문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아니라, 문제 파악 및 해결에 필요한 정보이고, 각각의 문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환경과 사회 이슈간의 깊은 상호의존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데이터 개선과 기업 공시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표 3〉과 같이 지속가능보고서와 ESG와의 큰 차이점은 기업 공시 및 정보공개의 의무화 여부와 외부 평가 기관의 검증과 평가이다. 향후 ESG 평가는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될 것이다.

28) "the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would have been viewed by a reasonable investor as having significantly altered the total mix of information made available" TSC Industries, Inc. v. Northway Inc., 426 U.S. 438, 449 (1976)

〈표 3〉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보고서와 ESG 평가 비교

구분	지속가능보고서	ESG
용도	보고용	평가용
의무 이행여부	자율성이 강조됨	ESG 관련 정보공개 및 공시 의무화 지향
보고 형식	서술적	지표중심 (데이터 기반)
평가 주체	주로 내부적 (자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 공인 평가기관
동종 업계간 비교	동종 업계간 비교가 어려움	동종 업계간 비교 가능
평가 대상	values or impacts 위주 (상대적으로 정형적)	topics or issues 위주 (가변적)
영역	경제, 환경, 사회 분리	비재무적 (환경, 사회 영역 중심)
거버넌스	별도 언급 없음	E, S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중요성 강조
그린워싱 (greenwashing) 여부	상대적으로 용이함	그린워싱 (greenwashing) 억제 수단
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one-way 방식 (제한적)	two-way 방식 (보장)
관련 국제규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2002년)	UN SDGs_Target 12.6 (2015년)

ESG 발전 방향은 E, S 영역의 엄격한 분류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E, S 영역의 통합적 접근이고, 문제 파악 및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공개 및 기업 공시의 의무화이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외부 검증 및 평가의 신뢰성을 담당하는 공인 기관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이다.

2014년 6월 UNEP FI 자산관리 워킹그룹(AMWG)이 발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_통합된 거버넌스(Integrated Governance_ A NEW MODEL OF GOVERNANCE FOR SUSTAINABILITY) 보고서에서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경영 및 통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환경적(E)이고 사회적(S) 이슈를 기업 전략에 결합하는 것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크나큰 기회이므로, 실패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최상위 발전 모델로 설명한 통합된 거버넌스(integrated governance)는 기존 거버넌스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사업전략과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의 장기 이익을 보장하는 기업 경영 및 통제를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즉 장기적 관점[29]에서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 추구와 이해관계자와의 더 긴밀한 관계 유지는 기업의 존

29) 2015년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는 독일 함부르크대학과 공동으로 "ESG &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Mapping the global landscape"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1970년 이래 발표된 2,000건 이상의 학술 논문을 메타 분석한 실증 연구에서 약 90% 문헌에서 ESG와 재무적 성과(CFP)는 부정적이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발견했다고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 CFP에 대한 ESG의 긍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립과 성장을 동시에 보장하기 때문이다. 본래 ESG는 유엔 주도하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및 개선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다. 하지만 ESG 개념이 세상에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통일된 글로벌 기준 구축은 현재 진행형이다. ESG가 도입단계를 넘어 관행과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을 강제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 향후 ESG 평가는 기업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발적인 연성 규범(soft law) 성격에서 강제력을 가진 법적 규범(hard law)으로 진화될 것이다.

앞으로 기성 정치의 틀(Politics as Usual)과 생활방식 관행(Business as Usual)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성과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자발적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는 인식에서, ESG 평가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NGO, 민간단체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성은 모든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ESG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조직 활동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ESG 요소(要素)를 통합함으로써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ESG 추구는 지속가능경영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의 통합을 위한 과도기적 중간 정차역이다.

〈표 4〉 기업측면에서 지구적 책임의 선택적 영향력 강화 모델

<table>
<tr><th colspan="2">Sustainable Development</th><th rowspan="2"></th><th colspan="2">Sustainable Management</th><th rowspan="2"></th><th colspan="2">ESG</th></tr>
<tr><td>E(Environment)</td><td rowspan="3">Category
Sphere
Dimension
Pillar
Area</td><td>E(Environmental)</td><td rowspan="3">Responsibility
Value
Sustainability
Impact</td><td>E(Environmental)</td><td rowspan="3">Topics
Issues
Affiars
Factors
Considerations
Concerns</td></tr>
<tr><td>S(Society)</td><td>➔</td><td>S(Social)</td><td>➔</td><td>S(Social)</td></tr>
<tr><td>E(Economy)</td><td>E(Economic)</td><td>G(Governance)</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2">E(Economy)– 기업 본연의 업무이므로 생략</td></tr>
</table>

☞ 지속가능발전(SD)은 E(Environment), S(Society), E(Economy)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함.
☞ 지속가능경영(SM)은 E(Environmental), S(Social), E(Economic)의 책임 또는 가치 추구로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활동임.
☞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중 E(Environment), S(Society) 영역에서 제한적 선택과 이행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Conditional, Selective and Focusing Rating Index)이며 Selective Impact를 추구함. 즉 ESG 평가지표는 E(환경), S(사회) 영역의 부분합(Subset)임.

점을 강조한다. 또한 거버넌스(G) 이슈는 ESG 모멘텀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5. UN SDGs와 연계된 기업의 이행 모델

2000년 UN은 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실행하였고, 후속으로 2030년까지 사람(people), 지구(planet) 및 번영(prosperity)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의제인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인류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위해 달성해야 할 범 지구적인 최소한의 목표(Must-Do List)이다. 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93개 UN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UN SDGs를 통해 기존 MDGs의 빈곤, 불평등, 질병 문제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지적 주제를 일자리 창출, 성평등, 경제성장,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평화와 안보 등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주제로 확대되었고, SDGs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참여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뿐 아니라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의 거버넌스도 포함된 ESG 보다 더 포괄적인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특히 SDGs 중 일부 목표는 기업의 ESG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급 유통망을 가진 기업들은 ESG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upstream과 고객을 포함한 downstream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UN SDGs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의 보장 세부 목표(12.6)에서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재무 보고 주기에 ESG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30]

〈표 5〉 기업의 지구적 책임 글로벌 아키텍쳐 전개 과정 종합

구분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	비고
Totality (지구적 책임) Nice-to-have Comprehensive Approach	CGR(1972)	UNCHE(스톡홀름선언) A New Global Ethic Norm
	↓	
	기업 사회공헌	지구적 책임 실천 활동
	↓	
	CSV(사회가치창출)	지구적 책임 실천 결과

30) UN SDGs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의 보장의 세부 목표(12.6)에서 "Encourage companies, especially large and transnational companies, to adopt sustainable practices and to integrate sustainability information into their reporting cycle"라고 언급하고 있다.

Selective Impact (지구적 책임) Must have Selective Approach	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	경제, 사회, 환경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
	↓	
	ESG(2005)	투자 원칙 선택과 집중 강화 (E, S, G 관련 요소 평가)
	↓	
	2030 UN SDGs(2015)	인류 공동의 달성 목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선택과 달성 목표 구체화
실천 방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적극적 실천 주체로서 시민은 은유적 표현임

Ⅳ. 결론

즉각적인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현재와 같지 않아야 한다. 정의롭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더 포용적이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부를 제외한 많은 조직 중에서 기업은 이해관계자 중시와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활동 범위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시대상(時代相)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술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1972년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조직들에 국제 규범으로 부여된 지구적 책임(GR)은 기존 사회적 책임과 다른 성격의 지구적 시민과도 같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실천 의지의 은유적 표현이다. 즉 지구적 책임의 실천 당사자로서 정부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 시민(citizenship) 개념을 내재화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입된 지구적 책임(GR)은 지속가능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업측면에서 유엔 산하 조직 내에서 지구적 책임 이행 글로벌 아키텍처(추진체계)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글로벌 윤리 규범인 지구적 책임(GR)을 규명하고자 유엔 인간환경선언에 따른 지구적 책임 등장 배경 및 조직의 유형에 따른 이행 주체별 책임을 분류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 달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은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지구적 책임의 반복적 이행 과정을 통해 사회가치창출(CSV)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CSS)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이 완성된다. 요약하면 지구적 책임(GR)과 사회가치창출(CSV)은 지속

가능한 사회 달성(CSS)을 위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후 관계라는 것을 규명(糾明)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도 사회공헌 기관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주요 의제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지구적 책임(GR) 이행은 유엔과 기업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아키텍쳐 구축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UNEP FI(1992년), GRI(1997년), UNGC(2000년), UN PRI(2006년), UN SDGs(2015년)이다.

지구적 책임의 글로벌 달성 방안으로 기업시민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파트너십 모델,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GRI) 자율 이행 모델,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을 통한 파트너십 모델, ESG 중대성 평가 프레임워크 모델, UN SDGs와 연계된 이행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ESG 중대성 평가 프레임워크 모델은 ESG 등장 배경, 기존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범주에 ESG 편입, UN PRI 출범을 통한 ESG 주류화, ESG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의 지구적 책임 이행 방안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 체계인 지속가능보고서와 ESG 차이점을 문헌조사로 비교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도입한 지구적 책임은 UN 글로벌 아키텍처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경영(SM), ESG,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로 발전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에 대한 포괄적 책임 중에서 핵심인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선택하여, 기업의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창안된 개념이다. ESG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구체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기업 본연(本然)의 재무적 분야를 제외하고, 비재무적 분야인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및 거버넌스 중에서 중요한 이슈를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중대성(materiality)을 평가하는 것이다. UN SDGs는 2030년까지 기업을 포함한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ESG는 구체적 평가 기준과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강제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자발적 규범 성격에서 점차 Must have의 강성 규범화하는 도구로 진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UN SYSTEM 내에서 발전된 개념인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 사회공헌, 지속가능성, 사회가치창출(CSV), 기업시민,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경영(SM), ESG,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같은 지향점을 가진 선순환 모델 속에서 동일한 성격(性格)의 용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기업시민리서치. (2020). 유엔 시스템과 기업.「이일청」, Vol.08 Winter.

김성천. (2009).「지속가능소비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김창환. (2020).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연구.「고등교육」, 3(1), 25-54.

김창환. (2011).「그린캠퍼스(GREEN CAMPUS) 평가를 위한 순위제도(RANKING SYSTEM)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회적가치연구원. (2021).「ESG Handbook Basic」.

송호근, (2019).「기업시민의 길」. 나남.

여현덕·박정민. (2009). 유엔글로벌컴팩의 성격과 발전방향: '사회책임(CSR)'과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되기'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서.「한국과 국제정치」, 25(2): 119-147.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2015). *ESG &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Mapping the Global Landscape*.

Dodd, E. Merrick. (1932),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Harvard Law Review*, 45: 1145-63.

Friedea, G., Buschb, T., & Bassenb A. (2016).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5(4): 210-233.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Goddard T. (2005), Corporate Citizenship and Community Relations: Contributing to the Challenges of Aid Discourse.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10(3): 269–296.

Por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Rittel, H. & Webber, M.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 4: 155-169.

Smith, Katherine. (2019. 8). The Corporate Citizenship Challenge. *Asian Steel Watch*, 7(6).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aris: UNESCO.

https://www.forbes.com/sites/georgkell/2018/08/19/in-memory-of-kofi-annan-father-of-the-modern-corporate-sustainability-movement/#73c789a054b1

https://institutional.deutscheam.com/content/_media/K15090_Academic_Insights_UK_EMEA_RZ_Online_151201_Final_(2).pdf

https://www.iso.org/files/live/sites/isoorg/files/store/en/PUB100258.pdf

https://sdgs.un.org/goals

https://www.unepfi.org/fileadmin/statements/fi/fi_statement_kr.pdf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freshfields_legal_resp_20051123.pdf

https://www.un.org/en/conferences/environment/stockholm1972

https://www.un.org/esa/dsd/agenda21/res_agenda21_00.shtml
https://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amwg_what_why_who_2004.pdf
https://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fiduciary_duty_21st_century.pdf
https://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responsible_investment_meeting_report_2004.pdf
https://www.unepfi.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9/10/Fiduciary-duty-21st-century-final-report.pdf
https://www.unpri.org/searchresults?qkeyword=UNIVERSITY&PageSize=10&parametrics=WVSECTIONCODE%7C1018&cmd=GoToPage&val=4&SortOrder=2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1/klaus-schwab-on-what-is-stakeholder-capitalism-history-relevance/

김 창 환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 박사과정, "그린캠퍼스(GREEN CAMPUS) 평가를 위한 순위제도(RANKING SYSTEM)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2011), "Environment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in Asia- Overview of Experieences in South Korea, Malaysia, and Japan(2019)",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연구"(2020), 「ESG평가를 대학 경영에 활용하는 방안_공모보고서」(2021).

〈논문접수일: 2022.11.10. / 심사개시일: 2022.11.30. / 심사완료일: 2022.12.10.〉

The emergence of Global Responsibility (GR), a Global Norm of Ethics, and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from the Business Perspective

Changhwan Ki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corporate global responsibility (CGR) granted as international norms to all types of organizations mentioned in the full text of the 1972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are concepts of a different nature.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especially through partnerships with the business, focusing on the UN Global Agenda and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 agency under the U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existing theory. Firs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global responsibility (GR) created by various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Second, we present a virtuous cycle model of global responsibility fulfillment for creating a sustainable society. Thir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s of global implementation to achieve global responsibility (GR) in terms of the business through a literature survey. Fourth, we would like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global architecture implement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GR) within the UN system in the historical context. Fifth, it is the analysis of differences through literature surveys on ESG, a means of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sustainability report.

[Key Words: P-C Partne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rporate Global Responsibility (CGR), ESG, Sustainability Report]

* PhD Student of Program in Urban Regeneration, Korea University